# [주요 개정사항]

| 페이지 | 개정사항 (12-1판) | 개정사유 |
|---|---|---|
| 1 | ○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규 입소자(입소 시) 선제 검사 유지 | · 선제검사 의무 유지 시설 명확화 |
| 3 | ○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소독 하루 1회 이상 권고 | · 일 2회 → 1회로 질병청 소독 매뉴얼(3-7판) 반영 |
| 4 | ○ 외부강사, 실습생, 자원봉사자는 유증상 시, 자가진단키드(RAT) 검사 실시 | · 각기 다른 출입 기준 일치 |
| 4 | ○ 입소자·이용자는 1일 1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하고, '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'에 기록 | · 일 2회 → 1회, 중복 작성하던 건강상태 기록지 일원화 |
| 4 | ○ 종사자는 출근 시,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(권고) | · 종사자는 권고로 전환 |
| 11 | ○ [서식1] 장기요양기관 건강 모니터링 <삭제> | · 종사자 업무부담 완화 |
| 14 | ○ [서식4] 장기요양기관 시설 방역수칙 이행 점검표 | · 현재 대응체계에 맞게 수정 |
| 15 | ○ [서식5] 소독 실시 대장 <삭제> | · 종사자 업무부담 완화 |
| 16 | ○ [서식6] 환기 실시 대장 <삭제> | · 종사자 업무부담 완화 |